생명보험설계사 핵심특강

1강_생명보험의 의의와 기능



강사 : 백 영

생명보험설계사 등록시험 안내

❑ 1편 보험이론 및 윤리 : 1, 2, 3장

❑ 2편 보험법규 : 4, 5, 6장

❑ 3편 생명보험

❑ 4편 제3보험

** 공통(1편, 2편) : 20 X 3 = 60

** 생명보험 / 3보험 : 10 X 4 = 40

1편 목차

❑ 1편 보험이론 및 윤리

제1장 생명보험의 의의와 기능

제2장 생명보험 이론

제3장 보험 윤리

생명보험의 정의

- ❑ 상부상조를 바탕으로 사망 등 불의의 사고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제도
- ❑ 저축기능 + 보장기능
- ❑ 마네스 : 1인은 만인을 위하여, 만인은 1인을 위하여

생명보험의 역사

❑ 고대

- 에라노이 (종교적 공제단체)
- 콜레기아 (하층민의 상호부조조합)

❑ 중세

- 길드 : 동업자간 상호부조조합
- 톤틴연금 : 국가에 융자금 제공 시 종신연금 지급
- 생존율 : 파스칼
- 사망률 : 핼리

❑ 근대

- 최초의 근대적 생명보험회사 : 영국 에퀴타블 생명

우리나라의 생명보험

❑ 상호부조제도

- 계 : 삼한시대부터 (돈, 곡식을 추렴, 소수에게 모아줌)
- 보 : 신라시대부터 (불교사원 공동재산 운영하여 지원)

❑ 근대적 생명보험

- 1876년 최초 : 일본 생보사 국내대리점
- 1960년대 : 단체보험 성장
- 1970년대 : 개인보험산업 발전, 보험의 해 지정(1977)
- 1990년대 : 보험시장 개방, 금융자율화
- 2000년대 : 방카슈랑스 도입, 홈쇼핑 등 판매채널 다양화
- 2020년대 :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

생명보험의 기능

❑ 사회보장제도의 보완

- 사회보험 : 국민건강보험(장기요양보험), 국민연금, 산재보험, 고용보험
  4대 보험 (연금저축보험 X)
- 공공부조 : 기초생활보장, 의료급여 제공 (고용보험 X, 산재보험 X)
- 사회서비스 : 노인복지, 장애인복지, 아동복지, 가정복지 등
  (복지는 서비스)

❑ 3층 보장

- 개인보장 : 개인연금
- 기업보장 : 퇴직연금
- 사회보장 : 국민연금

생명보험의 기능

❑ **사회보험 vs 민영보험** : 상호보완

- 사회보험 : 의무가입, 법률 규정, 최저생계 및 의료보장, 사회적 형평성
(정부운영)

- 민영보험 : 임의가입, 계약 결정, 보험료 수준 보장증감, 개인별 적정성
(민간운영)

생명보험의 기능

①

❑ 생명보험 운용자산 현황

- 유가증권 70%대 (국공채 비중이 가장 높음)
- 대출채권 10%대
- 현금, 예치금
- 부동산

*운용비중 순위 : 유가증권(1위) > 대출채권(2위) > 현금과 예치금(3위) > 부동산(4위)

❑ 생명보험자산의 특성

- 장기자금, 신탁재산, 공공적 성격

❑ 자산운용 원칙

- 안전성
- 유동성
- 수익성
- 공익성 (공익성 무관 X)

생명보험산업 현황과 전망

❑ 생명보험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배경

1) 급속한 고령화와 노후준비 부족

2024년 출산율 : 0.75명 OECD 최저수준 / 높은 노인빈곤율

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하향

- 총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

7% 이상 : 고령화사회 ; 2000년 진입

14% 이상 : 고령사회 ; 2017년 진입

20% 이상 : 초고령사회 ; 2024년 진입

2) 질병과 재해의 증가

- 사망원인 1순위 암(악성신생물), 2 심장질환, 3 폐렴, 4 뇌혈관 질환
  5 자살 6 알츠하이머병

3) 1인가구 증가와 자기책임주의 강화

- 노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 책임의식 점점 약화

2024년 1인 가구 약 36. 1 % (전체 가구유형 중 가장 큰 비중)

❑ 재무설계

- 재무목표를 세우고 재무상태와 현금흐름에 맞게 자산을 배분하고 투자하는 생애 전반에 걸친 과정

❑ 재무설계의 필요성

1) 생애 소비만족 극대화
- 소득의 흐름과 소비지출의 흐름이 불일치
- 중년기 잉여소득을 사회초년기와 노년기로 이전

2) 미래 리스크 대비
- 물가상승, 실업, 질병, 장수

3)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
- 부동산 편중에서 금융자산 비중 확대 예상
- 금융상품의 다양화
- 초고령사회 진입(2024년 기진입)

생명보험설계사 핵심특강

2강_생명보험 이론



강사 : 백 영

1편 목차

❑ 1편 보험이론 및 윤리

제1장 생명보험의 의의와 기능

제2장 생명보험 이론

제3장 보험 윤리

생명보험의 기본원리

❑ 생명보험의 기본원리 : 대수의 법칙, 수지상등의 원칙

❑ 대수의 법칙

- 관찰 횟수를 늘려 가면 발생 확률이 일정
- 동일한 성질의 위험을 가진 보험단체의 가입자 수가 많으면
  사고발생확률의 정확성이 증가되어 보험단체의 안정성 상승

❑ 사망률과 생명표

- 사망률 : 1년간의 사망자 수 / 연초의 생존자 수
- 국민생명표 : 전체 국민 대상
- 경험생명표 : 보험가입자에 대한 실제 사망통계치를 근거로 작성
- 2024년 4월부터 10회 경험생명표를 표준위험률로 사용

❑ 수지상등의 원칙

- 납입보험료 = 지급 보험금 + 비용
- 순보험료 계산

보험계약 관계자

❑ 보험계약자

- 보험회사와 계약을 한 사람 = 보험료 납입의무
- 자연인, 법인, 다수,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

❑ 피보험자

-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, 수에는 관계 없음
-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의 경우 반드시 서면동의
  전자서명도 가능 / 구두동의X

❑ 보험수익자

- 보험금 청구권을 지정 받은 사람

❑ 보험회사(보험자)

- 보험금 지금 책임, 금융위원회 허가 (금융감독원 X, 생보협회 X)

생명보험 계약내용

❑ 보험사고

- 보험금 지급을 약속한 사고
- 사망, 생존, 장해, 입원, 수술, 진단, 만기 등

❑ 보험기간

-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(=위험기간, 책임기간)

❑ 보험료 납입기간

-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(매년1회 납입이 원칙, 월납 활용 다수)
- 보험기간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음 (예 : 단기납)

❑ 보험금액

-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약정된 금액

❑ 보험료

-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지불하는 금액

보험료 구성 원리

❑ 보험료 결정

- 수지상등의 원칙 : 보험료 납입총액 = 지급하는 보험금 + 지출비용의 총액

  예) 1년 사망보험금 3천만원 = 피보험자 1,000명 * 연 3만원

❑ 현금흐름방식

- 3이원방식 : 예정위험률, 예정이율, 예정사업비를 보수적인 표준기초율 가정

- 현금흐름방식 : 3이원방식 + 계약유지율, 판매량, 투자수익률 등 다양한 가격요소를 반영하여 보험료 산출

  (회사별 최적가정 → 상품개발 확대)

보험료 구성 원리

❑ 배당

- 유배당 보험계약에 대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잉여금의 일정비율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선적립 후 지급 (자유화)

❑ 배당의 지급방법

- 현금지급방법
- 보험료 상계방법
- 보험금, 환급금에 가산방법 (보험금 감액방법 X)

❑ 무배당보험

- 배당을 감안 보험료를 할인하여 산출하므로 유배당에 비해 저렴

❑ 배당의 예시

- 예상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연금보험의 경우 직전 5개년 실적을 근거로 가능

보험계약 성립

❑ 보험계약의 성립 요건

- 낙성계약 : 보험계약자의 청약 + 보험회사의 승낙

❑ 보험계약 청약

- 불요식 계약이며 실무적으로 청약서 사용
-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
-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가능
  (수신하였을 때 교부 인정, 송신X)
- 통신판매 : 전화(이메일X)를 이용 계약자의 답변,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하여 설명의무 완료

*개인보험계약의 단체취급 가능

- 동일한 단체에 소속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5인 이상이 동일 상품

보험계약 성립

❑ 청약철회

-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
(단 청약일로부터 30일 초과 시 철회 불가)

- 청약철회 시 반환보험료 : 기납입보험료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(즉시 X)
(신용카드는 취소)

- 반환지연 시 : 기납입보험료 + 보험계약대출(공시X) 이율(연단위복리)로 계산한 금액

- 청약철회 불가능 계약 :
진단계약,
전문금융소비자 체결계약(단체계약),
보험기간 90일 이내 (1년 이내X) 계약

보험계약 성립

❑ 청약승낙, 거절

- 낙성계약 : 청약 거절 가능
- 승낙 및 거절기간
  무진단계약 :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통지가 없으면 승낙 간주
  (진단계약 : 진단일 기준)
- 거절 시 반환보험료 : 평균공시이율 + 1%(연복리)
  (신용카드 취소)

❑ 보험계약의 효력 = 보장개시

- 1회 보험료를 받은 때 (주의 : 보험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)
- 진단계약 : 건강진단과 1회 보험료 납입이 모두 완성된 날
  (둘 중 늦은 시점이 보장개시일)
  (승낙 전이라도 보장개시)

보험계약 성립

❑ 보험계약의 효력 = 보장개시

예시)

* 청약 승낙 보험료납입(*)

* 청약 보험료납입(*) 승낙

* 청약 보험료납입 건강진단(*) 승낙

* 청약 건강진단 보험료납입(*) 승낙

참고) 납입은 자동이체 신청, 신용카드 승인정보 제공 포함

보험계약 성립

❑ 승낙 전 보험사고

- 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 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: 책임
  (면책 :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등)

❑ 보험계약 무효

-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 : 기납입보험료 반환 (해지가 아니므로 해약환금금X)
- 무효사유
  *타인의 사망이 보험사고 : 피보험자의 서면동의(전자서명) 불비
  *만15세 미만자,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사망이 보험사고
  *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 혹은 초과

보험회사의 주요의무

②

❑ 보험약관의 교부, 설명의무

-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 설명
- 상기 의무를 위반한 경우
  *3개월 이내 최소가능 (해지X, 무효X)
  *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가산하여 취소 시 반환

❑ 보험금 지급의무

- 중도보험금 : 특정시점에 생존
- 만기보험금 : 만기까지 생존
- 사망보험금 : 보험기간 중 사망
  *사망추정 : 일반실종은 생사가 5년간 불분명하고 실종선고(행방불명X)

❑ 장해 정의

-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 상실상태 (의학적인 판단 ; 일시적 X)
- 한시적 장해로 5년 이상인 경우 장해지급률 20%로 지급

보험금 지급 의무

❑ 보험금 지급기일

-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구비서류 접수 시 : 3영업일 이내
- 지급사유 조사, 확인 필요 시 : 10영업일 이내
- 10영업일 이내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 시 : 30영업일 이내
- 보험금 지급기일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:
  소송제기, 분쟁조정신청, 수사, 해외사고

❑ 보험금 미지급 사유

-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
  (참고 : 심신상실 혹은 보장개시일 2년 경과 시 자살의 경우는 지급)
-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
-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

보험계약자 주요 의무

❑ 계약전 알릴의무

- 피보험자의 위험을 측정하여 계약의 인수, 보험료 산정을 위해(선의성)
-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의 주요 의무(청약서 질문표에 명시)
-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
  *회사가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
  *알릴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
  *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경과
  *체결 후 3년 경과
-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 : 해약환급금(기납입보험료X) 지급,
  보험료 혹은 보험가입금액 조정

❑ 보험료 납입의무

- 원칙은 연납이나 일시납, 연납, 월납 등

계약의 부활 등

❑ 보험료 연체

- 2회 이후 보험료 납입최고(독촉)기간 : 14일(보험기간 1년 미만시 7일) 이상
- 해지 : 납입최고기간 끝나는 날 다음날

❑ 통지의무(계약후 알릴의무)

-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(계약자, 수익자, 피보험자)
- 연락처, 주소 변경시(계약자, 수익자 / 피보험자X)

❑ 계약의 부활

- 해지 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: 3년 이내
- 부활보험료 : 평균공시이율 + 1% 범위 내 추가
- 심사 : 신계약과 동일
- 강제집행으로 해지된 경우 :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특별부활 가능하며 강제집행 특별부활 시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 보험수익자에게 통지 의무
- 설계사 등의 부당한 계약전환 부활 : 소멸 6개월 이내 부활 청구 가능

계약의 변경 등

❑ 보험계약의 변경

- 보험종목 변경 : 1회 보험료 납입 후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인 경우
  (예: 종신→연금)
- 보험가입금액 변경 : 감액된 부분은 해지로 간주 (증액 X)
- 보험계약자 변경 : 보험회사 승낙 필요
- 보험수익자 변경 : 보험회사 승낙 불필요

❑ 기타

- 사망을 보험사고로 동의한 피보험자는 장래를 향하여 철회가능
- 소멸시효 : 보험금 청구권 등 3년간 미행사시 완성(보험료 청구권 2년)
-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: 임직원, 설계사, 대리점의 사유로 손해 발생시
  (보험중개사 X)
- 보험나이 : 피보험자의 만나이 기준(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)
  매년 계약해당일 나이 증가
- 보험계약대출 : 해약환급금 범위 내(납입보험료 X), 언제든지 상환 가능
- 보험안내자료 : 약관과 다를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

생명보험 언더라이팅

❑ 생명보험 언더라이팅

- 피보험자의 위험을 선택하여 적절한 위험집단으로 분류
- 보험료 및 가입조건 등 결정하는 과정(계약심사), 위험률차익 관리
- 역선택 방지 : 위험 사실을 속이고 보험에 가입하는 행위 방지
- 필요 : 계약자간 공평성 유지 및 선의의 계약자 보호

❑ 언더라이팅 절차

- 1차 선택 : 보험설계사에 의한 선택
- 2차 선택 : 의적 진단에 의한 선택
- 3차 선택 : 언더라이터에 의한 선택
- 4차 선택 : 계약적부 확인에 의한 선택
  (피보험자의 신체적, 환경적, 도덕적 위험에 대한 조사)

생명보험 언더라이팅, 클레임

❑ 언더라이팅 고려대상

- 환경적 언더라이팅 : 직업, 운전, 흡연, 음주, 취미, 거주지 위험
- 신체적 언더라이팅 : 연령, 성별, 병력, 신체상태
- 도덕적 언더라이팅 : 고의성, 도덕적 해이
- 재정적 언더라이팅 : 역선택 및 계약 실효 방지(예:소득수준 고려)

❑ 표준미달체, 우량체

- 표준미달체 : 표준체보다 위험이 높은 경우
  보험료 할증, 특정질병부담보, 특정부위부담보,
  보험금 삭감(보험가입 후 위험이 감소하는 경우)
- 우량체 : 표준체보다 위험이 낮은 경우 보험료 할인

❑ 클레임

- 보험금 청구에서 지급까지의 업무 (계약적부 확인 X, 보험가입 업무 X)
- 사고조사 경험, 법률지식, 의학지식 필요

2강 종료

생명보험설계사 핵심특강

3강_보험윤리



강사 : 백 영

1편 목차

❑ 1편 보험이론 및 윤리

제1장 생명보험의 의의와 기능

제2장 생명보험 이론

제3장 보험 윤리

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

❑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

- 2018년 제정
- 보험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보험영업활동의 기본원칙
- 성과평가의 적정성, 내부통제, 분쟁해결 등
- 보험상품 판매 전,후 보험소비자와의 정보불균형 해소
- 부당영업행위 금지
-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(중요사항, 일반금융소비자 해당)
- 모집종사자는 보험회사가 제작하여 승인된 안내자료만 사용
- 권유단계 : 상품설명서 제공
- 청약단계 : 보험계약청약서 부본, 보험약관
- 유지단계 : 1년 이상 유지 보험 관리내용을 연1회 이상 제공
  (변액보험은 분기별 1회 이상)
- 고객정보 : 동의절차 밟아 최소한 정보 수집(목적달성 후 파기)
  제3자 제공 금지(관계법령, 고객 동의 시 가능)
-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1인 이상 지정
- 다양한 민원접수 채널 운영(일원화 X)

보험설계사의 역할과 책임

❑ 보험인 윤리강령

- 공공성, 공신력 제고, 성실봉사, 기술개발, 준법
  (주주가치극대화 X 경쟁력 제고 X)

❑ 보험설계사 윤리의 중요성

- 고객은 복잡한 약관보다 설계사의 설명을 더 신뢰

❑ 보험설계사의 자세

- 법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고객(설계사 X) 입장에서 행동

❑ 보험설계사로서의 사명감

- 단순한 상품 판매가 아닌 고객에게 제대로 된 보장설계
- 전문성 : 세무, 부동산, 금융지식 등 다양한 분야 전문지식을 갖춤

설계사 자신과 보험업에 대한 책임

❑ 3대 기본지키기 → 위반 시 3개월 이내 계약 취소 가능

1) 보험약관 교부 및 중요한 내용 설명
2) 청약서 사본(부본) 전달
3) 자필서명 안내 및 확인
   - 고객(계약자 또는 피보험자)이 직접 서명

❑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(승환계약) 금지

- 고객필요에 의한 계약전환시 비교설명확인서(청약서X)에 자필서명

❑ 불법광고 금지

- 광고는 고객 동의 후 / 보험료(대출) 연체 안내는 동의 없이 가능

❑ 회사 승인 자료 사용

- 보험회사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만 사용(금융감독원 승인 X)

보험회사 및 고객에 대한 책임

❑ 보험설계사의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

1) 법규, 회사규정 준수
2) 보험료 수령 : 회사이름 영수증 교부, 일일수금 등 변칙적인 방법 불가
3) 언더라이팅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
4) 고객불만처리 : 구두 혹은 전화 등 접수 시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림

❑ 보험설계사의 고객에 대한 책임

1) 고객의 입장에서 적합한 상품 판매
2) 회사 및 상품소개 : 안내자료 임의 작성시 회사승인 필요
3) 고객정보보호
 - 주민등록번호는 고객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만 사용
4) 판매 후 지속적 관리 : 계약유지, 보험금 지급 등

보험사기방지활동

❑ 보험사기

- 보험사기방지특별법
  보험사기행위는 가중 처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  보험사기이득이 50억 이상 :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
  보험사기이득이 5억 이상 50억 미만 : 3년 이상 징역
  미수범도 처벌
 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
  보험사기행위 알선·유인·권유·광고 행위도 처벌 대상
- 연성사기 : 보험사고를 확대(과장)한 경우, 다른 피해자는 없음
- 경성사기 : 보험사고를 고의로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

❑ 보험사기 유형

- 사기적인 보험계약 : 예) 고혈압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
-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: 가장 악의적
- 보험사고의 위장 및 허위사고 : 전통적 보험범죄 (예 : 허위진단서)
- 보험금 과다청구 : 과잉진료

보험사기와 정보의 비대칭 현상

❑ 도덕적 해이

- 보험사고나 손해를 증대시킬 수 있는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불성실한 행동
- 내적 도덕적 해이 : 직접적으로 보험제도를 악용
- 외적 도덕적 해이 : 병원, 자동차 수리인 등이 간접적으로 보험제도를 악용

❑ 역선택

- 계산된 위험보다 위험이 높은 집단이 보험을 가입하여 사고발생률이 증가하는 현상

*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공통점 : 정보의 불균형

*차이점

도덕적 해이 - 보험계약 체결 후 현실화 (예 : 무단횡단)

역선택 - 보험계약 체결 전 현실화 (예 : 발병을 숨기고 보험가입)

보험사기 계약 특징 등

❑ 보험사기 계약의 특징

- 고액계약, 다수계약
- 비연고성, 자발성계약
- 부자연스러운 보험계약 : 소득수준보다 과다한 가입
- 보험사기자의 개인적 속성 : 과중한 부채 등
- 보험범죄는 형법 처벌 대상으로 보험사기가 광범위한 개념

→ 보험범죄는 보험료 상승으로 선의 계약자의 피해

❑ 보험범죄의 사회적 피해

- 보험제도의 존립기반 위협, 보험료 부당 인상
- 생명존중 가치관 파괴
- 모방범죄 증가
- 보험산업의 이미지 악화
- 공보험(건강보험)의 재정에 악영향으로 공보험료 상승

보험사기 방지활동 등

❑ 보험사기 방지활동

- 연성사기(경성사기X) 위주의 생계형 보험사기 증가
- 보험범죄수사협의회 : 경찰청이 금감원, 생손보협회, 보험회사로 구성하여 운영
- 보험범죄 신고센터 : 금감원, 보험회사
- 보험사기특별조사반 : 보험회사 (직접 처벌X)

❑ 생명존중과 자살예방

-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보험업계 노력

생명보험설계사 핵심특강

4강_보험모집 준수사항



강사 : 백 영

2편 목차

❑ 2편 보험법규

제4장 보험모집 준수사항

제5장 보험소비자 보호

제6장 생명보험 세제

보험업법과 보험모집

❑ 보험모집 관련 법규

- 보험상품 :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등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/ 보험업법
- 보험업 구분 : 생명보험업, 손해보험업, 제3보험업
- 보험감독방식 : 한국은 실질적 감독주의 (공시주의 X, 준거주의 X)
  (보험회사의 설립에서 해산까지 전 과정을 계속적으로 감독)

❑ 보험모집

-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행위
  중개 : 설계사, 중개사
  대리 : 대리점

❑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

- 보험설계사 : 중개
- 보험대리점 : 대리
- 보험중개사 : 독립적으로 중개
- 보험회사 임원(대표이사, 사외이사, 감사 및 감사위원 제외) 또는 직원

보험설계사 등록

❑ 생명보험설계사

- 금융위원회에 등록
- 생명보험협회가 금융위로부터 등록업무 위탁 받아 수행 (금융감독원 X)
-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: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

❑ 설계사 등록요건

- 모집에 관한 교육과정 이수(합격일부터 1년 이내)
- 생명보험 관계업무에 1년 이상(등록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) 경력 + 교육이수

❑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자

-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, 파산선고 후 미복권 / 신용불량은 다른 개념
-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벌금 이상 형을 받고
 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면제 후 2년 미만
- 보험업법, 금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
-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 미만
-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,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유용한 후 3년 미만

설계사 교차모집, 등록

❑ 교차모집제도

- 일사전속주의 예외
- 1개의 이종(異種) 보험회사 상품 판매 가능
- 생명보험 ↔ 손해보험

❑ 등록 말소

- 등록 : 보험회사를 통해 협회에 등록(본인 직접 등록X)
- 말소 : 회사를 통한 말소
  본인이 협회방문(협회 홈페이지 본인인증 가능) 직접 말소
- 위촉과 해촉은 회사와 설계사의 관계
  말소는 협회에 등록사항을 말소하는 것(말소 후 타보험회사 등록 가능)

- 영업정지, 등록취소 가능 사유
 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미영업, 적합성 원칙, 설명의무 위반
  보험업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 2회(1회X) 이상 받은 경우 등

보험대리점

❑ 보험대리점

- 업종 : 생명, 손해, 제3보험대리점
- 설립형태 : 개인, 법인보험대리점
- 보험회사(계약자 X)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 대리, 보험료 수령 등 제공
- 일사전속제가 적용되지 않아 여러 보험사 계약 체결
- 보험금 지급, 계약적부확인은 대리점 업무 아님
- 등록 : 금융위원회 권한을 위임 받은 협회

❑ 보험대리점 등록요건

- 대리점 교육과정 이수(교육 이수 후 2년 이내 신청)
- 생명보험 관계업무에 2년 이상(등록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) 종사한 경력
- 법인대리점 : 대리점 등록요건 갖춘 자 1명 이상
- 이미 보험설계사,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보험대리점 불가
- 영업보증금 : 개인대리점 1억원, 법인대리점 3억원 이내
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면제

보험중개사

❑ 보험중개사

-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(특정 보험사 소속 X)
- 금융감독원에 등록 신청 (영업보증금도 금융감독원 예탁)
-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은 불가

❑ 금융기관 보험대리점

- 방카슈랑스
-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가능 기관
  은행, 투자매매(중개)업자, 저축은행 등(우체국X)
  신용카드업자(겸영여신업자 제외) : 전화모집 가능
- 점포 내 지정된 장소에서 대면 모집 / 인터넷홈페이지 가능
- 방문판매, TM 불가 (신용카드업자 전화 등 판매가능)
- 점포별로 2인 (3인X)까지 판매
- 종신보험, 자동차보험 판매 불가
- 제3보험은 주계약 한정(질병사망 특약부가 불가)

보험업법, 금소법에서 정한 준수사항

④

❑ 특별이익 제공 금지

- 연간보험료 10%와 3만원 중 적은 금액 초과
  예) 월보험료 2만원인 경우 22,000원 선물 제공 : 가능

❑ 보험안내자료 규정 위반시 벌칙

- 보험 안내자료 기재금지 : 장래의 이익배당 예상
  연금보험은 직전 5개년 실적으로 예시 가능

*설명의무 : 일반(전문X)계약자가 중요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하도록 설명

❑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

-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정보로 실손의료보험 중복 확인

❑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관련 준수사항

- 통신 모집의 경우에도 설계사와 같은 등록(무등록자 X)
- 청약철회, 계약해지도 통신수단으로 가능
-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청약서 자필서명 취득하나 사망(장해)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로 전화모집은 음성녹음 등 요건 충족 시 자필서명 의무 면제 가능

협정에서 정한 준수사항

❑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

- 금융위원회 인가
- 적용 : 협정 당사자인 보험회사 및 소속 모집종사자 (대리점 X)
- 위반행위시 : 피해회사는 6개월 이내에 생명보험 협회에 신고

❑ 제재금 (벌금X, 과태료X)

- 무자격자 모집 등 기타 100만원 이하
- 특별이익 제공 3,000만원 이하
- 경유계약(다른 모집자 처리) 200만원 이하
- 승환계약(등록말소 전후 3개월 해지 후 등록말소일 6개월 이내) 100만원 이하

  *본인, 배우자, 직계존비속은 가능하나 형제자매는 불가

우수인증 설계사

❑ 우수인정설계사(CIC) 자격기준

- 3년 이상 동일회사 근속 설계사 또는 전속 개인대리점
  (자회사형 GA등록 설계사 가능, 법인전속대리점 소속 설계사 X)
- 2008년 도입
- 영업실적 : 연간소득 4천만원 이상
- 신계약유지율 : 13회차 90%, 25회차 80% 이상
- 직전 1년간 품질보증해지·민원해지·무효 '0건
-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사고모집인 기록, 금융질서 문란 없음
- 인증기간 :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(인증기간 1년)

생명보험설계사 핵심특강

5강_보험소비자 보호



강사 : 백 영

2편 목차

❑ 2편 보험법규

제4장 보험모집 준수사항

제5장 보험소비자 보호

제6장 생명보험 세제

보험소비자 보호제도

❑ 예금자보호법

- 예금보험공사 : 예금보험료를 받아 지급사유 발생시 예금자에게 지급
- 지급사유 : 지급정지, 인가취소, 해산, 파산 (합병X)
- 보호대상 : 개인 및 법인 1인
- 보장금액 : 동일한 금융기관 내 1인당 1억원(세전,원금+소정이자)
- 연금저축, 사고보험금, 확정기여형(DC형), 개인형퇴직연금(IRP) 각각 1억원 별도보호
- 비보호상품 :

  재보험, 보증보험, 법인보험 등

  변액보험 주계약(최저보증은 보호)

  확정급여형(DB형) 퇴직연금 적립금

보험소비자 보호제도

❑ 금융분쟁조정위원회

- 금융감독원 운영
- 조정 신청 후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 회부
- 60일 이내 조정안 작성
-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재판상의 화해 효력 (재판결과에 우선X)
- 조정안을 20일 이내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것으로 봄

❑ 보험가입 조회

- 생명보험협회 : 생존자 및 사망자에 대한 보험가입조회
- 생존자 본인인증 : 공인인증서, 휴대폰 등 이용 인증 (신분증 사본X)

광고 심의제도 등

❑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

-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를 지정
- 대리인 : 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
- 계약자 = 피보험자 = 보험수익자 인 경우 가능

❑ 광고심의 대상

- 간행물, 방송매체, 온라인매체 및 각종 인쇄물
- 브랜드광고는 협회 심의 제외
- 소속 설계사 광고물 : 보험사 준법감시인 확인

❑ 광고심의 절차

- 상품 및 업무광고는 사전심의가 원칙
- 홈쇼핑보험대리점 판매방송 : 사전심의 + 상시 모니터링
- 광고심의위원회 : 심의 없이 혹은 심의와 다르게 광고 시 1억원 이하 제재금

보험정보의 공시

❑ 공시

- 해당 기업의 재무사항, 영업실적 등을 외부에 알리는 제도
  - 생명보험회사 : 회사의 경영공시, 상품공시
  - 생명보험협회 : 회사별 경영공시, 보험상품 비교공시
  - 금융감독원 : 회사별 재무현황 및 금융사고 현황 등

❑ 정기공시

- 결산공시 : 3개월 이내, 3년간 공시
- 분기공시 : 2개월 이내, 다음 공시 전까지(상반기 공시는 결산공시 전까지) 공시

❑ 수시공시

- 발생 즉시 공시, 3년간 공시
- 수시공시사항 : 중대한 사항

❑ 상품공시

- 보험회사 상품공시 : 계약 관리내용, 가격공시실에서 계약자가 가입설계 가능
- 생명보험협회 : 상품비교공시

보험정보의 공시

❑ 보험다모아

-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공동 운영
- 온라인 전용보험, 단독실손의료보험, 자동차보험 등 비교 및 가입경로 안내(바로 가입 X)

❑ 금융감독원 공시

- 보험회사의 경영상태를 비교, 평가 가능
- 회사별 재무현황, 금융사고 현황 등

생명보험 민원현황과 유형

❑ 보험민원

- 민원 : 민원인이 회사에 대해 이의신청, 진정, 건의, 질의 등의 의사표시

❑ 보험민원의 특징

- 보험은 어느 정도 민원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속성 (우연한 사고)
- 보험회사와 계약자를 연결하는 판매채널 : 불완전판매 가능
-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및 판매정책 영향
- 보험민원은 악성민원인(문제행동소비자)에 의해 남용될 소지가 큼

❑ 보험민원의 주요유형

- 최다민원 : 보험모집,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민원
- 주로 금융감독원에 접수(우편, 팩스, 인터넷, 방문)

생명보험설계사 핵심특강

6강_생명보험 세제



강사 : 백 영

2편 목차

❑2편 보험법규

제4장 보험모집 준수사항

제5장 보험소비자 보호

제6장 생명보험 세제

개인보험 계약에 대한 세제 (근거 : 소득세법)

❑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

- 보장성보험 : 만기환급금 ≤ 납입보험료
- 근로소득자(일용근로자 제외)가 기본공제대상자를 대상, 개인사업자X
- 납입보험료 100만원 한도, 12% 세액공제(지방소득세 별도)
- 기본공제대상자 :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, 배우자/장애인 나이 무관
-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: 100만원 한도 15% 세액공제(지방소득세 별도)
- 중도해지 : 해당 연도 세액공제 가능
- 국민건강보험료, 고용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 : 소득공제

❑ 연금계좌

- 연금저축계좌 : 연금저축보험
  연금저축신탁
  연금저축펀드
- 퇴직연금계좌 : 확정기여형(DC형)퇴직연금
  개인형퇴직연금계좌(IRP)

*확정급여형(DB형)퇴직연금은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에서 제외

연금계좌 세액공제

❑ 연금계좌 세액공제

- 종합소득자 납입액 12% (지방소득세 별도)
- 종합소득액 4,500만원 이하(총급여액 5,500만원 이하) 15% (지방소득세 별도)

❑ 연금계좌 납입액 (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)

- 연 600만원(퇴직연금 포함시 900만원)
- 연 1,800만원까지 납입가능
- 총급여 6천만원 근로소득자 사례

(단위:만원)

연금저축계좌납입액	퇴직연금계좌납입액	세액공제 대상금액	세액공제액(12%)
0	900	900(0+900)	108
200	700	900(200+700)	108
700	200	800(600+200)	96
900	0	600(600+0)	72

연금보험 vs 연금저축

❑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

- 10년 이상
- 일시납 1억원
- 월적립식(월150만원) 납입기간 5년 이상(선납 6개월 이내)
- 종신형으로 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(중도해지 불가)

구 분	연금보험	연금저축
취급기관	생명보험회사	모든 금융기관
세제혜택 적용요건	일시납,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, 종신형 연금보험계약별 요건 충족	보험료납입 및 인출요건 충족
보험료 납입시 세제혜택	없 음	연금계좌 세액공제
보험금 수령시 세제혜택	보험차익 비과세 (이자소득세 비과세)	연금소득 분리과세 선택 (3~5% 세율 적용, 지방소득세 별도)
소득구분	이자소득	연금소득

보험세제

❑ 단체보장성보험료 손금산입

- 회사가 부담한 단체보장성보험료는 급여에 해당
  <회사는 손금(비용), 종업원은 급여에 해당>
- 연 70만원 이하 : 복리후생비로 회사는 손금 인정, 종업원 세부담 없음
- 연 70만원 초과 : 일반 단체보장성보험과 동일

❑ 퇴직연금

-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
-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
-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
- 확정급여형(DB), 확정기여형(DC), 개인형퇴직연금(IRP)

보험금의 상속 • 증여

❑ 상속 및 증여세

- 상속세(사망시), 증여세(생전)는 재산의 무상 이전에 부과
- 포괄주의
- 세율 : 1억 이하 10% ~ 30억 초과 50% 누진

❑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

-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부분은 상속재산으로 간주
- 사례 : 계약자, 피보험자(父) / 수익자(子) / 보험금 5천만원
  보험료 1천만원 중 父 8백만원 납입

5천만원 X 8백만원 / 1천만원 = 4천만원(상속재산)

❑ 보험금의 상속세 과세

- 수익자 ≠실질적인 보험료 납입자 : 상속세 과세
- 수익자 = 실질적인 보험료 납입자 : 과세X

보험금의 상속・증여

❑ 상속순위

- 1순위 : 직계비속 + 배우자
- 2순위 : 직계존속 + 배우자
- 3순위 : 형제자매
- 4순위 : 4촌 이내 방계혈족
- 태아는 상속순위 인정
- 배우자 상속분은 5할을 가산

❑ 금융재산 상속공제

- 순금융재산 최고 2억원까지 상속공제
- 2천만원 이하 : 전액
-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: 2천만원
- 1억원 초과 : 순금융재산 20%(2억원 한도)

보험 세제

❑ 증여세가 과세되는 보험금의 범위

- 납입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
- 증여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을 증여재산으로 봄

❑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

-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 비과세
- 장애인이 보험수익자인 모든 보험금에 적용

소득세법

❑ 과세소득의 범위

- 개인의 소득에 대해 열거주의
-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
- 종합과세 : 이자, 배당, 사업, 근로, 연금, 기타
- 분류과세 : 퇴직, 양도

❑ 종합소득세 계산

- 1.1 ~ 12.31까지 소득을 계산하여 다음연도 5월 신고, 납부
- 과세표준 = 종합소득금액 - 종합소득공제(기본공제, 추가공제 등)
- 산출세액 = 과세표준 X 세율
- 세율 : 1,400만원 이하 6% ~ 10억원 초과 45% 누진

❑ 금융소득 과세

- 금융소득 = 이자소득(저축성보험 보험차익 포함) + 배당소득(집합투자기구 이익 포함)
- 금융소득 종합과세 :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
- 분리과세 : 2천만원까지 원천징수 14% + 지방소득세 1.4% = 15.4%

보험 세제

❑ 연금소득 분리과세 선택

- 사적연금(연금저축, 퇴직연금 등)은 총연금이 연 1,500만원 이하
  *55세 이후 수령, 5년경과 수령, 연금수령한도 내 수령
-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 선택 가능
  *70세 미만 : 5%
  70세 이상 ~ 80세 미만 : 4%
  80세 이상 : 3%
  *종신형 : 3%
- 연금수령조건 미충족 : 기타소득으로 15% 적용

❑ 보험설계사 세제

- 보험설계사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
- 보험회사는 설계사 수당 지급 시 3%(지방소득세 별도)를 원천징수
- 간편장부 대상자 : 신규 /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7,500만원 미만
-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: 직전 7,500만원 이상 /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

생명보험설계사 핵심특강

7강_생명보험의 개요 및 상품



강사 : 백 영

3편 목차

❑ 3편 생명보험

제7장 생명보험의 개요

제8장 생명보험 상품

생명보험의 개요

❑ 생명보험 관련 법규

- 상법 보험편 : 생명보험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근거법률 (표준약관 근거)
- 보험업법 : 보험업 허가 및 감독
- 기타 : 공정거래법, 자본시장법(변액보험), 예금자보호법, 금융소비자보호법 등

❑ 생명보험의 정의

- 생명보험상품 :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(우연성)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등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(보험업법)

❑ 생명보험계약 VS 손해보험계약

- 생명보험 : 사람의 생존,사망 / 정액보상 / 장기
- 손해보험 : 재산상의 손해 / 실손보상 / 단기

(보험사고의 우연성은 동일)

생명보험의 특징

❑ 생명보험계약의 특성

- 유상, 쌍무계약성 :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,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
- 불요식, 낙성계약
- 부합계약성 : 약관을 전체로 동의하거나 거절(작성자 불이익의 원칙)
- 사행계약성 : 장래의 우연한 사고(경제 안정을 위한 소극적 이익추구)
- 선의계약성 : 신의성실의 원칙, 고지의무
- 계속계약성 : 일정한 보험기간 동안 계속
- 상행위성 : 보험회사 및 계약자 모두 상법 적용
- 개별성, 단체성 : 계약자는 개별, 보험회사는 다수 계약자

❑ 생명보험 상품의 특징

- 무형의 상품 : 구매 후 바로 효과를 보기 어려움
- 미래지향적, 장기효용성 상품 : 장래 보험사고 발생시점에서 효용인식
- 청약과 승낙 등 절차 필요 : 계약자 청약 + 보험회사 승낙(증권교부X)
  고지의무, 필요시 건강진단, 심사 등 절차
- 다양한 설계가 가능
- 계약후 관리가 필요 : 예) 갱신안내

생명보험 상품의 구성

❑ 상품개발 원칙

- 보험회사는 상품을 개발할 경우 기초서류 작성
  사업방법서(계획서), 보험약관,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(청약서X)
- 금융위원회 신고 (생명보험협회X, 금융감독원X)

❑ 주계약과 특약

- 주계약 : 기본이 되는 보장내용(보장성, 저축성)
  주계약만으로 보험계약 성립 가능
- 특약 : 고객 니즈에 따라 주계약에 특약을 부가
  특약만의 가입은 불가

*보장 추가, 확대 특약 : 암보장, 입원특약 등

*편의를 위한 제도성 특약 : 우량체할인특약, 선지급서비스특약, 연금전환특약 등

생명보험 상품의 분류

❑ 상품 분류

- 주계약 보험사고 기준 : 생존보험, 사망보험, 생사혼합보험
- 개인 보장성 : 사망(종신, 정기)
  제3보험(질병, 상해, 간병)
- 개인 저축성 : 생존(연금, 교육)
  생사혼합
  개인형퇴직연금(IRP)

❑ 개인보험 vs 단체보험 (보험계약자 수가 아닌 대상에 따라)

- 개인보험 : 피보험자를 개인으로 한정
- 단체보험 : 단체의 구성원을 주피보험자로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가입
  계약관리 편리
  보험료 저렴

보험상품의 분류

❑ 보장성 vs 저축성

- 보장성보험 :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(만기환급금)이
 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
  *만기환급금 ≤ 기납입보험료
  *정기보험, 종신보험, 제3보험

- 저축성보험 :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
  *만기환급금 > 기납입보험료
  *연금보험, 교육보험, 연금저축보험 등

❑ 생존보험, 사망보험, 생사혼합보험

- 생존보험 : 만기까지 살아 있을 경우 보험금 지급 ; 연금보험, 교육보험
- 사망보험 : 보험기간 중 사망시 보험금 지급 ; 정기보험, 종신보험
- 생사혼합보험 : 사망보험(보장) + 생존보험(저축)

보험상품의 분류

❑ 일반계정 vs 특별계정

- 특별계정 : 일반계정이 아닌 별도의 계정에서 운용
- 특별계정상품 : (세제적격)연금저축보험, (실손의료보험X)
  퇴직연금원리금보장보험, 퇴직보험, 변액보험, 자산연계형보험

❑ 준비금의 이자적립방식

- 금리확정형
- 금리연동형 : 운용수익률 혹은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 (대부분 저축성보험)
- 실적배당형 : 변액보험(투자성과가 100% 계약자에게 귀속)
- 자산연계형 : 특정자산의 운용실적에 연계
  최저보증이율(1～2%) + 추가이율
  변액보다 안정적이며 일반상품보다 높은 수익률 기대

❑ 정액보험 vs 실손보험

- 정액보험 : 보험금 확정 (대부분의 생명보험상품)
- 실손보험 : 실손의료보험은 손해액 일부는 본인이 부담(본인부담제)

보험상품의 분류

❑ 갱신형 vs 비갱신형

- 갱신형보험 : 일정기간 경과 후 위험률을 변경하여 보험료를 다시 산정
- 실손의료보험, 일부 질병보험, 간병보험에 적용
- 갱신여부는 가입자가 결정

❑ 표준형 vs 저해지환급형

- 표준형 : 해약환급금 모두 지급
- 저해지환급형 : 일정 기간 동안 해약환급금을 적게 주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낮게 책정

❑ 기타

- 진단, 무진단
- 배당, 무배당

주요 생명보험 상품

❑ 종신보험

- 피보험자가 언제 어떤 경우로 사망하더라도 약정된 보험금 지급
- 특약 부가로 종합보장형 보험설계 가능

-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유동화 (2025년 도입)
  * 대상 : 금리확정형으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,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
  * 유동화 조건 : 부분유동화(최대 90%) 방식으로 정기형으로 운영
  * 신청자격 : 55세 이상인 계약자면 누구나 (소득/재산요건 없음)
  * 유동화 방식 : 매월 지급받는 연금형 방식 또는 현금이 아닌 현물 또는 서비스형태로 지급하는 서비스형 방식

❑ 유니버설보험

- 보험료 추가납입, 중도인출 가능(유니버설 기능)
- 기본보험금에 공시이율(예정이율X, 실적배당률X)로 부리 되어 추가 적립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

주요 생명보험 상품

❑ 장애인보험

- 비장애인과 동일한 심사, 정당한 사유 없이 청약거절 불가
-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
- 장애인전용보험상품 : 재해사망, 질병사망 모두 보장 가능
- 세제혜택 : 세액공제 100만원 추가(15%)
  장애인이 수익자인 보험금 연간 4천만원 한도 증여세 비과세
- 장애인전용보험 제도성특약 : 일반보장성보험에 가입도 장애인세액공제 가능
-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(사업비율과 이자율 우대적용)
- 생명보험협회는 장애인 보험가입차별 신고센터 운영

주요 생명보험 상품

❑ 연금보험

- 연금개시 전 : 제1보험기간 / 연금지급기간 : 제2보험기간
- 제1보험기간 사망시 : 계약자적립액 또는 사망보험금 지급 후 계약 소멸

- 연금의 지급방법
  *종신연금형 : 평생 지급 (연금지급 후에는 해지 불가)
  *확정연금형 : 연금지급기간 확정
  *상속연금형 : 생존기간에 적립금의 이자만 지급
  *혼합연금형 : 지급방법 혼합선택 (종신형을 선택하면 계약해지 불가)

- 세제적격 연금저축
  *가입나이제한 : 없음
  *최소납입기간 : 5년 (10년 X)
  *납입한도 : 연간 1,800만원 (분기 300만원 X)
  *근거법령 : 소득세법 (조세특례제한법 X)
  *보험료 공제 : 세액공제 (소득공제 X)

주요 생명보험 상품

❑ 퇴직연금

- 퇴직금을 외부금융기관에 적립
-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

- 제도 종류
  *확정급여형(DB) :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
  *확정기여형(DC) :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급여 변동
  *개인형퇴직연금(IRP) : 퇴직 또는 이직시 받은 퇴직금을 적립, 개인적 가입
  *기업형 IRP : 상시근로자 10인(5인X) 미만 사업장 (DC형 도입과 동일 효과)

- 퇴직연금사업자 : 보험회사, 은행, 증권, 근로복지공단 (저축은행X)
- 가입대상 :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
- 자산관리 계약 : 보험계약, 신탁계약
- 근로자 교육 : 연 1회 이상
- 판매 : 퇴직연금모집인 자격 취득자

주요 생명보험 상품

❑ 변액보험

- 보험금이 자산운용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 (실적배당형 보험)
- 보험업법, 자본시장법 동시 적용
- 생명보험회사만 판매
-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과 해약환급금 변동
- 투자리스크를 계약자가 부담 (특별계정 운용)
- 선택특약은 일반계정에서 운용
- 안전성보다는 수익성을 좀 더 중시
-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특별계정에 투입
- 계약자 적립금이 특별계정의 평가에 따라 매일 변동

- 일정 수준이상 사망보험금 보증(최저보증) : 중도해약시 최저보증이 안됨

*변액종신, 변액유니버설보장형 - 기본사망보험금

*변액연금, 변액유니버설적립형 - 기납입보험료

*변액연금 연금개시시점 - 기납입보험료

주요 생명보험 상품

❑ 변액보험 상품

- 구조 : 기본보험계약 + 변동보험계약 + 선택특약
  (보험료 산출) (특별계정) (일반계정)

- 종류
  1) 변액종신 : 연금전환특약 가능
     일반종신보험으로 전환 가능
  2) 변액연금 : 1보험기간 중 사망시 기본보험금 + 계약자적립금 지급
  3) 변액유니버설 : 적립형, 보장형

- 계약관리 : 분기별 1회 이상 계약자에게 운용실적 등 통보
- 보험회사 홈페이지 : 계약자별 운용현황 확인 가능

생명보험설계사 핵심특강

8강_제3보험



강사 : 백 영

4편 목차

❑ 4편 제3보험

제9장 제3보험의 개요

제10장 제3보험 상품

제3보험의 개요

❑ 제3보험의 정의

- 생명보험(정액보상)과 손해보험(실손보상) 성격을 함께 가짐 / Gray Zone
- 생보사, 손보사는 제3보험 겸영 가능
- 보험사고 : 신체의 상해, 질병, 간병
- 피보험이익 : 원칙적으로 없음(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)

❑ 제3보험의 구분

- 상해보험 :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 사고로 인한 상해치료 비용 및 사망보장
- 질병보험 : 질병발생 및 그로 인한 입원, 수술, 통원 등 보장
- 간병보험 : 치매 또는 일상생활장해 등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보장

❑ 생명보험계약 vs 손해보험계약

- 생명보험 : 사람의 생존,사망 / 정액보상 / 장기
- 손해보험 : 재산상의 손해 / 실손보상 / 단기

제3보험 관련 법규

❑ 상법상의 지위

- 상법에서는 제3보험이라는 용어 없음
- 상해, 질병보험은 상법상 인보험 / 간병보험은 상법에 미반영
- 생명보험의 15세미만자, 심신상실자, 심신박약자 사망은 무효이나
  상해보험은 적용 받지 않음
- 질병보험은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규정을 준용

❑ 보험업법상 근거

- 3보험업은 독립된 하나의 보험업 (생보나 손보의 일부 X)
- 3보험 가능 보험사 : 독립 제3보험사,
  모든 종목에 대해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 및 생명보험회사

❑ 제3보험 모집자격

- 금융위원회의 등록업무를 위탁 받은 보험협회에 등록
- 시험합격 + 교육이수 / 3년 이내 3보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 + 교육이수
- 제3보험만 모집하려면 생명보험 혹은 손해보험협회 한 곳에 등록 (양협회X)

제3보험의 특징

❑ 제3보험의 특징

- 겸영 : 생보, 손보는 겸영금지이나 제3보험은 겸영허용
- 질병사망특약 요건
  *생명보험 : 보험기간 제한 없음 / 보험금액 제한 없음
  *손해보험 : 보험기간 80세까지 / 보험금액 2억원
- 보험금의 지급방법 : 정액보상, 실손보상 모두 가능

- 피보험이익 : 손해보험에서 필수 개념(실손보상이 가능한 제3보험 존재)
  *금전으로 산정 가능
  *보험사고 전에 확정
  *피보험이익을 최고한도로 계약
  (생명보험, 제3보험은 피보험이익 해당사항 없음)

❑ 제3보험 설계기준

- 제3보험은 보장성보험
-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소멸
- 정액보상, 실손보상 모두 가능하며 실손보상은 비례보상

상해보험

❑ 상해보험 의의

-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및 상해의 결과로 인한 사망 보장 상품
- 상해인정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생명보험보다 많음

❑ 생명보험 VS 상해보험

- 상해보험 : 사고 발생 여부 및 발생시기, 발생원인, 피해정도 등이 불확정적
- 생명보험은 발생시기만 불확정적

❑ 상해사고의 요건 (3가지 동시 충족)

1) 우연성 :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이 예견되지 않는 상태
2) 외래성 : 신체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기인 (내재성X)
3) 급격성 :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태 (계속성X 지속성X)

*상해와 질병 관계

- 상해사고의 결과로 발생된 질병은 보상
-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해는 보상제외

상해보험의 종류

❑ 상해의 개념

- 반드시 외관상 상처자국을 남기는 것에 한정하지는 않음 (부상보다 넓은 개념)
  (예 : 1급 감염병)

❑ 상해보험의 주요 보장내용

- 재해사망보험금 :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
- 재해장해급여금 : 장해분류표상
- 재해수술급여금 : 재해분류표상
- 재해입원급여금 : 재해로 인한 직접치료를 목적
- 만기환급금 : 만기환급형인 경우로 만기에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경우

❑ 상해보험의 일반적 가입조건

- 보험기간 : 1년 이상
- 가입대상 및 연령 : 고연령자도 가능 (일부 위험직 제외)(연령에 관계없는 단일률)
- 직업별위험률 적용 : 직종별 위험등급체계
- 보장하지 않는 사망 : 예로 암사망은 계약자적립액 지급 후 계약소멸
  (질병사망은 특약으로 보장 가능)

상해보험

❑ 직업, 직무 변경시 알릴의무

- 직업별 위험등급은 총 5등급으로 구분 : 등급에 따라 3단계로 위험률 적용
- 위험한 직업, 직무 변경시 :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통지할 의무
  (보험수익자X)
  (직업변경을 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음)
- 통지의무 불이행시 : 보험금 삭감 가능
- 보험회사는 직업(직무) 변경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
  (해지시 해약환급금 지급)
- 변경된 직업과 관계없이 발생한 사고는 보상 받을 수 있음

*예) 사무직에서 귀농 : 통지의무

질병보험

❑ 질병보험

- 질병 : 심신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일차적 또는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
 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
- 질병 : 원인이 신체에 내재 / 외래성 X / 노화로 인한 요통
- 상해 : 원인이 외부에 존재 / 외래성 O /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침

❑ 질병보험의 가입조건

- 보험기간 : 대부분 10년 이상
- 가입가능 연령 : 대부분 만15세 이상
-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 높아짐 (고연령 및 건강상태에 따라 가입제한)
  (상해보험 : 직종별 위험등급 체계)
-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 사망 : 계약자적립액 지급 후 보험계약 소멸
- 종신보험 시장이 포화되면서 3보험 시장은 다양한 질병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

질병보험의 종류

❑ 암보험

- 대표적인 질병보험
- 보험기간 : 대부분 10년 이상(만15세 이상)
- 보장개시 : 일반적으로 90일 이후 보장개시
- 만기환급 유무 : 만기환급형, 순수보장형
- 주계약, 특약 모두 가능
- 제자리암(0기암)의 경우 암관련 보험금의 10~20% 지급(보험회사 차이)
- 가입 후 일정시점(예 1년) 이내 진단 시 감액지급(예 50%)

❑ 암보험금의 종류

- 암진단보험금 : 보장개시일 이후 암진단
-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 : 동일한 암 치료로 2회 이상 입원시 1회 입원으로 간주 합산
  치료 중 보험기간 만료시 회당 최고한도일 기준 보장
  (암치료 후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경우는 지급예외)
- 암직접치료통원보험금
- 암수술보험금 : 암수술로 지출된 금액
- 암사망보험금 : 특약

질병보험의 종류

❑ 어린이 보험

- 원칙적으로 사망보장 설계 불가
- 만15세미만 사망시 납입한 보험료와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 지급
  (계약은 소멸)
- 최근 100세까지 보장기간 연장하여 판매하는 추세

❑ CI보험

- 종신보험과 건강보험의 장점을 결합한 상품
- 중대한 암, 뇌졸중, 급성심근경색 등 치명적 질병(Critical illness)
  치명적 질병 발병시 사망보험금 일부 선지급
  (중대한 암에 대한 기준은 회사별 차이가 있음)
- 질병에 따른 치료비 보상 측면에서 질병보험의 성격

실손의료보험

❑ 실손의료보험 개요

- 질병, 상해로 치료시 실제 부담한 의료비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보상
-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액 + 비급여 항목의 합계액

  (2018년 4월부터 단독형 상품으로 판매)
- 다수 계약시 비례보상 :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초과이득 금지

실손의료보험

❑ 실손의료보험 현황

- 4세대 실손의료보험(2021) : 주계약(급여) + 특약(비급여)
- 연간 보장한도 : 급여 5천만원, 비급여 5천만원
  (통원 회당 20만원 이내, 30만원X)
- 자기부담률 : 급여 20%,
  비급여 30%
- 공제금액(통원) : 급여 의원급 최소 1만원,
  종합병원 최소 2만원
  비급여 최소 3만원
-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
  보험료 차등제 시행시기 : 4세대 출시 후 3년 유예 → 2024년 7월 1일 이후 갱신분부터 적용
  비급여만 적용(할인, 할증방식 / 의료취약계층 예외)

*직전 1년간 비급여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1~5등급 구분
수령액 없으면 할인, 100만원 이상부터 최대 300% 할증

- 비급여 보험료 할인·할증등급은 1년간 유지,
  1년 후에는 직전 12개월간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
- 실손보험 전산화 제도 시행 : 병원급 이상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(2024년 10월 25일)
  (실손24 어플리케이션) 의원급 요양기관 및 약국 시행(2025년 10월 25일)부터

간병보험

❑ 간병보험

-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가 되거나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
  간병자금 및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보험

- 일상생활장해상태 : 이동을 스스로 할 수 없으면서 식사하기, 화장실 사용하기,
  목욕하기, 옷입기 중 어느 하나라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 (말하기 X)

❑ 간병보험의 종류

- 공적 장기간병보험 :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; 사회보험 방식
- 만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65세 미만의 자
  장기요양 인정점수에 따른 1,2등급 판정 필요 (정액보험금 X)
  *장기요양등급 : 1~5등급 + 인지지원등급 = 총 6개 등급
  숫자 낮을수록 중증
  (1등급이 가장 중증, 인지지원등급이 가장 경증)
- 민영 장기간병보험 : 공적보험보다 먼저 시작
  *보험금 지급방식 : 정액보상, 실손보상 ; 우리나라 정액보상형태
  일상생활장해상태, 중증치매상태 진단

간병보험

❑ 간병보험 면책

- 보장내용별로 다름
- 면책사항 : 알콜중독, 정신질환 등
- 면책 예외 : 재해로 인한 일상생활장해상태나 중증치매상태가 되는 경우, 면책기간중에도 보장

❑ 간병보험의 가입조건

- 보험기간 : 대부분 종신(일부 80세 만기형)
- 가입가능 : 일반적으로 30세 이후
- 위험률변동제도 : 금융위원회 인가를 얻어 위험률(보험료) 조정

합격과 성공을 기원합니다
baehom@naver.com